**북경 세무국을 통한 공회경비(준비금) 대리징수의 주요 내용과 영향분석**

㈜엠케이차이나컨설팅 2011. 9. 26.

|  |
| --- |
| 북경시총공회(이하 “북경총공회”)는 지난 6월 29일 북경 소재 기업의 공회경비 또는 공회설립준비금을 북경시 지방세무국을 통해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회경비(준비금) 세무대리징수 시범지역 확대 및 전면적인 업무 확대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关于做好工会经费（筹备金）税务代收扩大试点和全面推广工作的通知，경공발[2011]56호, [부록] 참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경 소재 기업은 공회경비 또는 공회설립준비금을 지방세무국을 통해 북경총공회에 납부해야 한다. 동 통지의 시행 이후, 기존에 의미 공회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은 공회경비의 납부방법에만 변화가 생길 뿐이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회가 설치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회설립준비금의 납부라는 새로운 비용부담 요인이 추가된다. 통지의 핵심은 북경총공회가 공회경비 및 공회설립준비금을 지방 세무당국을 통해 징수함에 따라, 지방 세무당국이 공회경비 및 공회설립준비금의 대리징수의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 세무당국의 대리징수주체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반기업이 공회경비 또는 공회설립준비금의 납부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세무당국에 대한 행정불복으로 비춰질 것이고, 결국 기업은 세무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회경비 또는 공회설립준비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북경에서의 공회경비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진출기업이 처한 정확한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북경에서 공회경비 및 공회설립준비금의 납부의무, 지방세무국을 통한 대리징수의 영향, 변화된 공회경비 및 공회설립준비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중국에서의 공회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북경시의 공회설치 관련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공회경비와 공회설립준비금 징수의 법률 근거**

**(1) 공회경비 징수의 법률근거**

공회（工会）는 직원이 스스로 희망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으로, 중국 <공회법>(工会法)에 따라 기업은 공회설립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

공회경비（工会经费）는 공회가 설치된 기업이 매월 전체 노동자 급여총액의 2%를 부담하는 경비로써, 징수한 자금은 주로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 및 공회활동에 사용된다.

중국은 <공회법> 제42조와 43조에 의거하여, 기업에게 공회경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회경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기층공회(회사 내에 설치된 공회) 또는 상급 공회의 신청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을 통해 지불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의 공회조직은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이하 전국총공회)-현급 이상 지방총공회- 기업공회 또는 산업별 공회 등의 기층공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회사에 공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매월 전체 노동자 급여총액의 2%를 공회경비로 상급 공회에 납부해야 한다. 금번 북경시는 이러한 공회경비의 징수방법을 직접 징수에서 지방세무국을 통해 대리징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2) 공회설립준비금 징수의 법률근거**

공회경비와 달리, 공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에게 징수하는 공회설립준비금(筹备金)은 <공회법> 및 법률문건에 그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중국의 공회업무를 총괄하는 전국총공회의 <정관> 제37조와 <기층공회조직 설립기간에 공회경비(준비금)을 공제 납부하는 사항에 대한 통지>（关于基层工会组织筹建期间拨缴工会经费（筹备金）事项的通知）에 의거하여, 전국총공회가 매월 직원 급여총액의 2%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경의 경우에도, 법률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경총공회가 2011년 1월 3일 발표한 <세무대리징수 시범업무 공회설치 준비금 관리방법>(北京市总工会税务代收试点工作工会建会筹备金管理办法) 제1조에 의거, 북경시 지방세무국을 통해 공회설립준비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공회설립준비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북경총공회가 지방세무국과 공동으로 공회설립준비금을 징수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지방 세무당국이 공회설립준비금의 대리징수 업무를 시작한 만큼, 북경시 정부에서 암묵적으로 공회설립준비금의 징수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표1] 공회경비와 공회설립준비금의 비교

|  |  |  |
| --- | --- | --- |
| **구분** | **공회경비** | **공회설립준비금** |
| 대상 | 공회가 설치된 기업 | 공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 |
| 법률근거 | 공회법 | 없음. (전국총공회 정관에 의해 시행됨) |
| 징수비율 | 매월 직원 급여총액의 2%. |
| 징수거부 | 인민법원의 판결을 통한 지불명령, 강제집행 가능. |
| 징수방법 | 북경시 지방세무국을 통한 대리징수 |

**(3) 공회경비 및 공회설립준비금의 납부의무와 세무대리징수 시행으로 인한 영향**

1) 공회가 설치된 기업

기존에 공회가 설치된 기업은 <공회법>에 따라 반드시 공회경비를 납부해야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러한 기업은 현행과 다름없이, 매월 급여총액의 2%를 기준으로 공회경비를 납부하고, 납부한 공회경비 중 60%를 기업공회의 전용계좌로 지불 받아 사용하면 된다. 금번 북경총공회가 북경 지방세무국을 통해 공회경비 대리징수를 시행함에 따라 공회경비의 납부방법이 변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길 뿐이고, 추가적인 공회경비 지출 및 비용부담이라는 영향은 없다.

2)공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

공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은 공회설립준비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리징수기관이 북경 지방세무국이기 때문에 세무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우 <북경시총공회 세무대리징수 시범업무 공회설립준비금 관리방법> >(北京市总工会税务代收试点工作工会建会筹备金管理办法) 제5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공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기업이 납부한 공회설립준비금 중 기업공회 지정 은행계좌로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 중 일정부문을 반환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공회법>에 따라, 공회경비 사용에 관한 제정권한을 갖게 된 중화전국총공회(이하 “전국총공회”)가 제정한 <공회 재무관리체제 및 경비 분할에 관한 임시규정>(工会财务管理体制和经费分成的暂行规定，공발재자(1982)2호)에 의거, 기업이 납부한 공회경비는 각각 기업공회에 60% 이상, 성/현급 공회에 35% 미만, 전국총공회에 5%로 분할 지급한다.

북경시 순의구의 경우에는 기업공회에 60%, 街道/鎭/開發區 공회에 10%, 순의구총공회에 20%, 북경총공회에 5%, 전국총공회에 5%를 분할 지급하고 있다. 이중 기업공회로 지급되는 경비는 북경총공회가 심사확인한 후, 기업공회가 개설하여 신고한 지정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그러나, 공회설립준비금을 납부한 기업이 향후 3년 이내에 기업공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설립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기업공회 유보금액만 반환받고, 이전 연도에 납부한 공회설립준비금은 모두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표2]공회설립준비금 납부 이후 공회설립시기에 따른 기업공회 유보금 반환 방법

|  |  |
| --- | --- |
| **구분** | **기업공회 유보금 반환여부** |
| 2011.6.31 이전 설립 | 1년 이내의 기업공회 유보금 전액 반환 |
| 2012.6.30 이전 설립 | 2년 이내의 기업공회 유보금 전액 반환 |
| 2013.6.30 이전 설립 | 3년 이내의 기업공회 유보금 전액 반환 |
| 2013.6.30 이후 설립 | 설립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기업공회 유보금만 반환 (이전 연도에 납부한 기업공회 유보금은 반환하지 않음) |

**2. 지방세무국을 통한 공회경비와 공회설립준비금의 납부방법**

**(1) 세무국을 통한 징수의 시행일정**

북경총공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북경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공회경비와 공회설립준비금(이하 “공회경비(준비금)”)을 지방세무국을 통해 대리 징수한다.

|  |  |  |
| --- | --- | --- |
| **구분** | **진행시기** | **대상지역** |
| **1단계** | 2011.1.1 ~ | 서성구(西城區) 일부 가도(街道), 풍태구(豊台區), 창평구(昌平區) |
| **2단계** | 2011.10.1~ | 동성구(東城區), 서성구(西城區), 조양구(朝陽區), 문두고구(門頭溝區), 순의구(順義區) |
| **3단계** | 2012.1.1~ | 북경 전체 행정구역 |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북경시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이 관할 지방세무국을 통해 공회경비 및 공회설립준비금 (이하 공회경비(준비금))을 납부해야 한다. 1~2단계의 시범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은 2011년 9월까지 기존 방식으로 납부하고, 2011년 10월~12월에 납부해야 할 공회경비(준비금)을 2012년 1월에 세무대리징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2) 공회경비(준비금) 납부시기**

공회경비(준비금)는 매 분기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공회경비를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소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충 납부해야 하고, 미납금액을 기준으로 1일 0.5%의 지연금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3) 공회경비(준비금) 납부금액**

전체 직원 급여총액의 2%이다. 전체 직원의 범위는 급여 또는 기타 형식으로 노동보수를 수취하는 전체 인원으로 다음의 직원들도 포함된다.

* 외국국적 직원
* 홍콩/마카오/대만 국적 직원
* 임시/계절 수요에 따라 채용된 직원
* 회사를 떠났으나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있는 직원
* 생활비를 수령하는 직원
* 퇴직하여 휴양하는 내부 직원 등

급여총액은 신고납부 귀속기간에 회사가 전체 직원에게 지불한 노동보수의 합계금액으로 시간제 급여, 개수불제 급여, 상여금, 보조금, 잔업비, 연장근무수당으로 지불한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4) 공회경비(준비금) 납부방법**

지방세무국의 대리징수 방법은 “온라인 신고납부” 방법과 “방문 신고납부”방법으로 구분된다. 두 경우 모두, 온라인 이체방식으로 통한 은행납부는 불가능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처리해야 한다.

 [온라인 납부방법] [방문 납부방법]

관할 지방세무국 방문

북경시 지방세무국

홈페이지 방문

(www.tax861.gov.cn)

<은행납부조회 증빙(공회)> 출력 또는 직접 기입

은행이 발행한 “전자납세 지불증빙”을 지참하여 상급 공회 방문,

<공회경비수입전용영수증> 발행

<은행납부조회증빙(공회)>지참하여 은행방문, 북경총공회 공회경비

전용계좌로 입금. 은행이 “전자납세 지불증빙”문건 발행

세무직원이 대리신고 또는 납세인에게 직접 신고 안내

<종합신고표> 작성하여

세무직원에게 제출

납부서 생성/보관, <은행

납부조회증빙(공회)> 출력

“신고납부” Click후

신고서 작성

ID & PW 입력

“공회경비(준비금)”

 신고납부 Click

**(5) 공회경비(준비금)의 세전 공제 가능성**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세무기관이 공회경비 대리징수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문제에 대한 공고>(关于税务机关代收工会经费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据问题的公告，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30호)에 의거, 기업이 납부한 공회경비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공회경비 대리징수 증빙을 기준으로, 직원 급여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전 공제가 가능하다.

북경시의 경우, 합법적이고 유효한 공회경비 대리징수 증빙은 상급 공회가 발급한 <공회경비수입 전용영수증>(工会经费收入专用收据)이다.

**(6) 공회경비(준비금)의 반환**

회사가 납부한 공회경비는 북경총공회의 심사확인을 거쳐 기업공회, 省/縣級 공회, 전국총공회에 각각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북경의 경우, 기업공회로 유보되는 공회경비는 전체 납부한 공회경비의 60%이며, 기업공회가 개설한 전용계좌로 이체된다.

**(7) 공회경비의 사용**

공회경비의 사용방법은 <공회법>에 따라 전국총공회가 제정한다. 전국총공회가 제정한 <기층공회 경비수지 관리방법>(基层工会经费收支管理办法)에 따라, 공회경비는 직원을 위한 서비스 및 공회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출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회설립준비금은 기업의 공회가 설립된 후, 해당 기업공회 계좌로 입금되어 공회경비로 사용되게 된다.)

[표3] 공회경비의 지출범위

|  |  |
| --- | --- |
| **구분** | **사용 범위** |
| 직원활동을 위한 지출 | 직원 교육, 문화 체육,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여 발생하는 지출(예시: 교육용 교재, 용품 구매 및 강사료 등) |
| 직원권익을 위한 지출 | 직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지출(예시: 노동관계 조정 및 화해 진행, 법률자문서비스 등) |
| 업무상 지출 | 공회간부 양성 및 업무전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예시: 공회간부의 학습 및 훈련용 교재 구매, 강사료 지불 등) |
| 자본적 지출 | 건설공정 종사, 설비공구 구매, 대형 유지보수 등 관련 지출(예시: 건축물 건설, 사무설비 구매, 교통도구 구매 등)(조건: 기업공회 경비결산 후 잔액이 있어야 사용 가능) |
| 사업지출 | 직원서비스를 위한 문화, 체육,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독립결산을 하는 소속사업단위에 대한 보조.독립결산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단위에 대한 각종 지출. |
| 기타지출 | 상술한 지출 이외의 지출(예시: 생활곤란 직원에 대한 보조, 직원집체복리를 위한 지출) |

**3. 공회설립에 대한 북경의 정책추이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1) 중국에서의 공회설립 현황**

2010년 기준으로, 중국전역의 기업공회 수량은 총 143.2만개이며, 기업공회에 가입한 전체 노동자수는 179,640,000만 명에 이른다. 다음은 기업 유형별로 분류한 누적 공회수량, 공회 회원수와 2010년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2010년 중국의 공회수량 및 공회가입 노동자수 현황

(단위: 만 개/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공회 수량** | **전년대비증감** | **점유율** | **공회 회원수** | **전년대비증감** | **점유율** |
| 국유기업 | 82,000  | - 7,000  | 6% | 28,530,000  | -3,038,000  | 16% |
| 집체기업 | 81,000  | -  | 6% | 10,446,000  | -361,000  | 6% |
| 민영기업 | 824,000  | 69,000  | 58% | 68,382,000  |  4,592,000  | 38% |
| 홍콩/마카오/대만기업 | 35,000  | -  | 2% | 8,321,000  |  1,361,000  | 5% |
| 외상투자기업 | 50,000  | - 1,000  | 3% | 9,562,000  |  -182,000  | 5% |
| 기타 | 360,000  | 42,000  | 25% | 54,399,000  |  6,251,000  | 30% |
| 합계 | 1,432,000  | 103,000  | 100% | 179,640,000  | 8,623,000  | 100% |

(출처: 2010년 공회조직 및 공회업무 발전현황 통계공보. 중화전국총공회 연구실)

주목할 것은 외상투자기업과 관련한 변화추이이다. 2010년 외상투자기업의 공회수량은 5만개로 전체 기업공회 중 약 3.5%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회수량 기준으로 살펴볼 때, 전년 대비 1,383개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회 회원수를 살펴보면, 외상투자기업 공회에 가입한 노동자수는 956.2만 명으로 전체 기업공회 가입 노동자수의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약 18.2만 명이 감소하였다.

중국정부가 기업공회 설립의 확대와 공회조직을 통한 노동자 권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이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2) 공회설립에 대한 북경의 정책추이**

중국정부는 기업 발전의 촉진과 노동자 권익의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공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바로 전국총공회이다.

전국총공회가 금년 1월에 발표한 <2011년~2013년 기업의 보편적 공회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업무 계획>에서 향후 3년간 중국의 공회설립 목표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첫째, 3년간 중국 전역의 기업공회 수량을 195만개 증가시켜, 공회가 설치된 전체 기업수량을 총446만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는 경우, 중국기업의 공회설치비율은 90%이상에 달하게 된다. 특히 10인 이상 외상투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기업, 민영기업의 공회설치 수량을 187만개로 증가시키고, 공회설치비율을 95%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공회설치 압박이 더욱 더 강하게 실행될 것으로 보이며, 금번 북경시에서 지방세무국을 통해 공회경비(준비금)을 징수하는 것과 유사하게, 각급 공회가 정부 행정기관(예시: 상무부분, 공상행정관리부문, 노동관리부문 등)과 연계하여 공회설치 요구와 감독관리를 진일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전국총공회의 기업공회 설치 목표

|  |  |  |
| --- | --- | --- |
| **구분** | **공회증가 목표수량** | **목표 공회설치비율** |
| 2011년 | 약 70만 개 기업 | 65% 이상 |
| 2012년 | 약 63만 개 기업 | 78% 이상 |
| 2013년 | 약 62만 개 기업 | 90% 이상 |

둘째, 2013년까지 기업공회에 가입한 노동자수를 3,100만 명까지 증가시키고, 기업공회에 가입하는 노동자 비율을 90%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각 연도별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5] 전국총공회의 기업공회 노동자 회원의 가입율 달성 목표

|  |  |  |
| --- | --- | --- |
| **구분** | **회원가입증가 목표수량** | **목표 공회설치비율** |
| 2011년 | 약 1,100만 명 이상 | 80% 이상 |
| 2012년 | 약 1,000만 명 이상 | 85% 이상 |
| 2013년 | 약 1,000만 명 이상 | 90% 이상 |

전국총공회가 설정한 향후 3년간의 정책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북경총공회 역시 <2011년 ~ 2013년 기업의 보편적 공회조직 설립 추진 업무계획>을 발표하여 기업의 공회조직 설치와 노동자의 공회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경의 각 區級 총공회는 북경총공회가 발표한 상기 3개년 업무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공회조직 설치 및 노동자 공회가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양구 총공회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공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수량을 2.7만 개 증가시켜, 조양구 기업의 공회설치 비율을 9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특히 10인 이상 외국기업, 홍콩/마카오/대만기업 및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이 북경에 설립한 기업의 공회설치 비율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양구에 소재하는 절대 다수 외상투자기업이 공회설치라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3년간 기업공회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를 21만 명 증가시키고, 노동자의 공회가입비율을 93%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북경총공회는 앞서 살펴본 공회설립 및 공회가입비율 제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외상투자기업의 공회설립을 추진하고, 규모가 작고 직원수량이 적어 공회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업종/빌딩 기준의 공회연합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기관에 협조를 구해 기업이 노동자의 공회조직 설치와 공회가입을 지지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번 지방세무국을 통한 공회경비(준비금)의 대리징수도 이러한 북경총공회 계획의 일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경총공회는 앞으로도 공상 세무, 인력사회보장, 통계, 교육, 건설위원회, 상무부문, 위생 등 행정부문과 협력하여 이들 행정기구가 기업의 심의비준, 연도검사, 세무징수, 통계 및 법률행위 감독 등의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회설치 독려행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북경총공회가 공회설치 업무를 상술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북경 소재기업에 대한 공회설치 요구는 나날이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진출기업은 공회설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3)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변화하고 있는 중국내에서의 경영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진출기업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회사의 경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회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공회법>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공회결성을 진행하는 것을 불허할 수 없으며, 또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중국정부와 전국총공회가 노동자의 권익강화를 위해 2013년까지 전체 기업사업장의 90% 이상에 공회를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우리기업은 공회설립이라는 화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둘째, 북경의 경우에 같이 공회경비를 지방세무국을 통해 대리징수 하거나, 공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회설립준비금을 징수하는 등, 기업의 공회설립 압박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우리기업은 한국에서의 경영과정에서 빈번하게 노출된 강성노조 성향, 파업권의 행사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결사단체인 공회 설립과 그 역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공회는 기업과 노동자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본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중국의 <공회법>에서 정한 공회의 기본 역할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관리권 행사 지지, 노동자를 동원하여 생산 및 업무임무를 달성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공회를 기업 인사부서의 복지과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기업에서 고급관리직원이 공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공회가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발생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공회의 파업권 행사도 한국과 다르다. 중국 헌법상 공회에 파업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파업권은 노동자와 공회의 법정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행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파업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 및 행정상 면책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임금복리 문제로 인한 노동자의 파업은 대개 “고용주와 노동자의 협상문제”로 간주하여 중국정부가 방임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공회경비계좌에 적립된 공회경비를 사용하여 직원교육비 및 직원집체복리 비용(예시: 생일잔치비용, 명절선물비용, 창립기념일 선물비용 등) 등을 지출하도록 유도하여, 기존의 회사비용을 대체함으로써, 회사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2% 미만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현재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임금단체협상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때 공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직원대표대회와 임금협상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업경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노동자와의 협상으로 인해 협상 전개 및 결론도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하여, 기업이 공회설립을 추진하고, 해당 공회의 합리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

**[부록]**

**북경시총공회 북경시지방세무국 문건**

**경공발[2011]56호**

공회경비(준비금)의 세무대리징수 시범지역 확대 및 전면 확대업무를 완벽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

각 구/현 총공회,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총공회, 각 업종별 공회, 각 국 공회, 각 집단/회사 공회, 각 직속 기층공회, 각 구(현) 지방세무국(분국):

공회경비(준비금)의 세무대리징수 시범업무를 전개한 이래, 각항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양호한 효과를 거두었다. 시 위원회와 시정부의 연구를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공회경비(준비금) 세무대리징수 시범 확대업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며,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1. 2011년 7월 1일부터 공회경비(준비금) 세무대리수취 시범범위를 동성구(東城區), 서성구(西城區), 조양구(朝陽區), 문두구구(門頭溝區), 순의구(順義區)(이하 “시범확대구”로 약칭)행정구역으로 확대한다. 2011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범확대구 징수업무를 개시한다.

시범확대구 범위 내에서, 중앙직속단위와 재정부문이 공회경비를 이체하는 단위 이외의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조직(이하 “비용납부단위”로 약칭)은 2011년 6월 이전에 납부해야 할 공회경비(준비금)을 기존 채널을 통해 자주징수방식을 채택하여 징수한다. 2011년 7월부터는 더 이상 자주징수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2011년 7월 ~ 9월에 납부해야 하는 공회경비(준비금)은 10월에 세무대리징수 방식으로 징수한다.

2. 2012년 1월 1일부터 공회경비(준비금) 세수대리징수업무를 전체 시 행정구역 범위로 확대하며 동시에 징수업무를 개시한다.

시범구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납부단위는 2011년 9월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공회경비(준비금)을 기존 채널을 통해 자주징수방식을 채택하여 징수하고, 2011년 10월부터는 더 이상 자주징수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2011년 10월 ~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공회경비(준비금)은 2012년 1월에 세무대리징수 방식을 채택하여 징수한다.

3.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기간에, 공회조직관계 및 세무등기지역이 서성구의 일부 가도(街道), 풍태구(豊台區), 창평구(昌平區)(이하 “기존 시범구”로 약칭)와 시범확대구 범위와 동일한 비용납부단위는 세수대리징수 방식을 채택하여 공회경비(준비금)을 징수한다. 공회조직관계와 세무등기지역이 기존 시범구 및 시범확대구 범위와 동일하지 않은 비용납부단위는 2012년 1월부터 세무대리징수방식으로 공회경비(준비금)을 징수한다.

4. 공회경비(준비금) 세무대리징수 시범 확대에 따른 대리징수 관리 등 사항은 <북경시 공회경비(준비금) 세무대리징수 시범지역 업무 관리방법>, <북경시 공회경비(준비금) 세무대리징수 시범업무 독촉 관리방법>, <북경시 공회경비(준비금)세무대리징수 시범업무 국고징수 관리방법>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5. <국가세무총국의 세무기관 공회경비 대리징수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증빙 문제에 관한 공고>(2011년 제30호)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세무기관에 위탁하여 공회경비를 대리 징수하는 지역에서 기업이 공제하여 납부한 공회경비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공회경비 대리징수 증빙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세전공제를 할 수 있다.

6. 기존 시범구에 소재하는 공회조직과 지방세무기관은 현행 업무배정 내용에 따라 이전 단계의 세무대리징수 시범업무 경험을 심도 깊게 종결하고, 다음 단계의 각항 업무를 계속하여 완벽히 수행한다.

시범확대구에 소재하는 공회조직과 지방세무기관은 홍보 및 지도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홍보전단지의 제공, 방문홍보 등의 형식을 통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조직에 공회경비(준비금) 세무대리징수의 의의와 역할을 홍보하고, 비용납부단위의 비용납부 지도업무를 확실하게 이행한다. 동시에, 공회조직은 원인 조사 및 비용출처정보 수집업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공회조직을 구축하도록 업무를 추진한다.

시범구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회조직과 지방세무기관은 홍보 및 지도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공회조직은 원인 조사 및 비용출처정보 수집업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비용출처기수를 찾아내어 세무대리징수 업무의 견실한 기초를 마련한다.

7.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북경시 총공회 북경시 지방세무국

211년 6월 29일

**주제어: 공회경비 세무대리징수 시범지역 확대 통지**

|  |
| --- |
| 북경시 총공회 판공실 2011년 7월 1일 인쇄발표 |

(총 600부 인쇄)